

기후변화대응협의회 규정

최종 수정일	2023.12.01
문서 관리부서	기획 담당 팀(부서)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동원금속의 기후변화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ESG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

- ① 협의회는 동원금속의 ESG경영(지속가능경영) 총괄을 포함한 각 자회사의 전략/기획 또는 ESG경영 담당임원 또는 팀장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의 개최 목적 및 필요에 따라 구성원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 의장은 그룹 ESG경영 총괄이 맡으며,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의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동원금속 본사 ESG경영 업무 담당 실무책임자로 한다.

제3조(역할)

협의회는 ESG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이행사항 및 성과 관리를 지원한다.

제4조(소집)

- 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안건에 따라 관련 자회사의 위원을 지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결의사항 등)

- ① 협의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1.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사업 추진
 2.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협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그룹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변경
 2.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협의회에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1.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경영현황 및 이슈사항
 2.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결의사항 등 처리)

- ① 협의회에서 결의·심의·보고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ESG위원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각 자회사의 ESG경영 업무담당 부서는 협의회에서 실행하기로 한 결의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각 자회사의 ESG경영 업무담당자는 협의회에서 결의 또는 심의된 사항의 실행결과를 본사 ESG경영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

- ①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동원금속 주식회사

대표이사 박 승 룡

[개정이력]

차수	제(개)정일	시행일	주요 개정내용	작성자
0	2023-12-01	2023-12-01	초도제정	기획 담당 팀(부서)

(붙임#1)

■ 기후변화대응 협의회 운영조직도

